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5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 박충권・임이자・김위상

김성원 • 유상범 • 엄태영

서지영 · 박대출 · 최은석

송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등의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UI로 인하여 일상생활 속의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두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정보통신서 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선 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을 명시하 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업종에 속하는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려는 경 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5항).

법률 제 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지능정보제품의"를 "지능정보제품(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4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에"를 "운영 등에"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 제46조(장애인 · 고령자 등의 지 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 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 장) ① ~ ③ (생 략) 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 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 지능정보제품(제47조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 보통신을 포함한다)의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 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신 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 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 보통신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품질인증 제도 <u>운영에</u>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u>.</u>
<u>⑥</u>	-
	-
<u>운영 등에</u>	
<u>.</u>	